

## ◎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-73호

다음 당사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(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한 자로 제33조의2(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·징수)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입니다.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(내용증명)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을 실시합니다.

2023년 02월 24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###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 건에 대한 반환명령 행정처분서 공시송달

1. 공고 사유: 행정처분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2. 법적 근거: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제31조, 제33조의2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국고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의 일부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용도 외로 사용
4. 공고기간 : 2023. 2. 24. ~ 3. 10. (15일간)
5. 공고사항

당사자	주소	처분 내용
(주)지에이치알 (대표자: 박*량)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5-30, 426호	40,296,536원 반환명령 - 제재부가금: 39,012,800원 - 교부결정 취소 반환금 이자: 1,283,736원

6. 이의신청: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7. 반환금 납부 방법: 아래 고지된 반납계좌로 납부
  - 반납계좌 : 기업은행 543-007324-01-512 (예금주 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)
8. 담당부서
  - 기관명(담당부서): 문화체육관광부(스포츠산업과)
  -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, 스포츠산업과
  - 문의처: 044-203-3120

아울러 반환금이 기한 내 납입되지 않을 경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3(강제징수)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여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<고지사항>

- 가. 본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나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.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- 라.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,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